

94.10.4

□ 인터뷰 / '공무원채용제도' 논문발표 이경희씨

“군필자 가산점제 불합리”

남녀고용평등법 위배...헌법소원 낼 터

김미경 기자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보상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형태여서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지난 27일 열린 이화여대 법학과 학회연합 발표회에서 ‘공무원 채용 시험시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 부여제도의 헌법적 고찰’ 논문을 발표했던 이화여대 법학과 3학년 이경희씨의 지적이다.

이씨는 먼저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시 가산점을 주는 현제도의 법적 문제점을 지적한다.

“헌법 제32조 6항은 “국가 유공

자·상이군인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근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지요. 그런데 가점제도의 근거법인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제대군인까지 국가유공자로 확대 해석해 버린 거죠.”

이씨는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부가 스스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점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노동부는 사기업들이 입사시험에서 군복무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고 금지하면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진 / 이정우 기자

지난 6월 이화여대 교수와 학생 1천9백31명이 7·9급 공무원 채용시 군복무자에게 주는 가산제도를 폐지해 달라며 행정쇄신위원회 등에 청원서를 제출할 때 동참하기도 했던 이씨는 오는 7일 행정쇄신위원회 본회의에서 가산점 폐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헌법소원을 내는 등 계속 싸워나간다고 밝혔다.